

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(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)

※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7일	
제출인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	
	③ 주 소		④ 전 화 번 호		
시설물	⑤ 위 치		⑥ 용도 및 규모		
주차장	⑦ 위 치		⑧ 주차대수 및 면적	대, m ²	
	⑨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		⑩ 주차장의 형태		
	⑪ 착공 예정일		⑫ 준공 예정일		

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(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)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제출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. 공사설계도서(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) 3.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. 토지의 지번 ·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(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· 건축연면적 ·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) ※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등기부 등본(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) ※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확인합니다.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제출인(대표자)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(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)을 제출인(대표자)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작성 시 유의사항

- 1.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2. ③·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- 3.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.
- 4.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.
- 5.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.
- 6. ⑩란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